|  |  |  |
| --- | --- | --- |
| **<상무부의 법정 경로를 통하여 분류(分類)처리하는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 리스트> 인쇄발부에 관한 상무부 판공청의 통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상무부 산하 각 직속조직, 각 상회·협회·학회:  상무주관부서의 신방(信訪)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무부의 법정 경로를 통하여 분류(分類)처리하는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 리스트>(이하 '<리스트>'로 약칭)를 인쇄발부하며 관련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분류(分類)처리 업무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입구부터 민원 청구사항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리스트>에 의거하여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류(分類)와 도입을 보장한다.  2. 선전 및 유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법정 경로를 통하여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을 분류(分類)처리함에 있어 '공개 일상화, 비공개 특례화'의 원칙에 따라 <리스트>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방문자 접대장소, 언론 브리핑회 등 방식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업무의 투명성, 공지성을 강화한다. 신방(信訪) 대중에 대한 선전과 유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접대 장소에 선전책자를 배포하고 업무절차도를 게시하여야 한다. 인내성 있게 자세히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떠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어떠한 절차로 본인의 민원 청구사항을 반영 및 해결해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3. 간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설, 전문강좌 실시, 지도책자와 업무지침 발간 등 방식으로 분류(分類)처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간부들이 분류(分類)처리 업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발성과 자각성을 강화하며 법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무부 판공청  2015년 9월 30일  **상무부의 법정 경로를 통하여 분류(分類)처리하는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 리스트**  상무(商務) 계통의 신방(信訪)사항 중 '법정 경로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재, 행정재심의, 소송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신방(信訪)사항을 다음과 같이 분류(分類)한다.  1. 행정처분 또는 인사처리결정 불복  상무(商務) 계통 내 공무원이 본인과 연관된 인사처리 결정에 불복하거나 상무부 산하 각 직속조직과 상회·학회·협회의 업무인력이 소속 조직에 의해 내려진 본인과 연관된 심사평가결과, 처분결정에 불복.  법정 경로: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 (내부 컴플레인).  2. 상무주관부서 또는 업무인력의 법률·기율 위반행위 제보  법정 권한을 위반하고 행정허가 실시, 규정을 어기고 상무(商務) 경쟁입찰 간섭, 관직 매매, 네포티즘, 규정에 어긋나는 간부 승진, 주택 과다 보유, 차량 배정 표준 초과, 공금을 이용한 식사와 관광, 생활 사치 등 혐의가 있는 상무주관부서 당원간부, 업무인력의 법률·기율 위반행위 반영.  법정 경로: 기율감찰부서에 제보.  3. 기업 불법행위 제보  불법경영, 지적재산권 침해, 세금탈루, 계약사기 등 혐의가 있는 기업의 불법행위 제보.  법정 경로: 공상행정관리부서, 침권·모조행위단속판공실, 세무주관부서, 공안국 등 기관에 제보.  4. 민사분쟁에 해당  각 유형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분쟁.  법정 경로: 중재협의서가 있을 경우 중재협의서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협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5. 행정재심의 및 행정소송 범위에 해당  (1) 행정기관에 의해 내려진 경고,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불법재물 몰수, 생산·영업 정지 명령, 허가증 압류 또는 취소, 면허증 압류 또는 취소 등 처벌 경정에 불복.  (2) 행정기관에 의해 내려진 재산 차압·압류·동결 등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에 불복.  (3) 행정허가 신청 후 행정기관에 의해 거절 또는 법정기한 내에 회답을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내려진 행정허가증·면허증·자격증 등 증서의 변경·중지(中止)·철회 결정에 불복.  (4)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경영자주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5)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했다고 인정.  (6) 행정기관이 불법 자금모집, 비용 할당 또는 불법으로 기타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인정.  (7) 행정기관이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  법정 경로: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 **商务部办公厅**  **关于印发《商务部关于通过法定途径分类处理信访投诉请求清单》的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本部各直属单位，各商会、协会、学会：  　　为做好商务主管部门信访工作，现将《商务部关于通过法定途径分类处理信访投诉请求清单》（以下简称《清单》）印发给你们，并就有关要求通知如下：  　　一、认真掌握分类处理工作要求，从入口处加强对投诉请求的甄别，依据《清单》，确保信访投诉请求准确分类导入。  　　二、做好宣传引导工作。通过法定途径分类处理信访投诉请求，要按照“公开为常态、不公开为例外”的原则，向社会公开《清单》。通过门户网站、来访接待场所、媒体通气会等方式广而告之，以增加工作透明度、公众知晓度；要加强对信访群众的宣传引导，有条件的要在接待场所印制宣传手册，张贴工作流程图；要进行耐心细致的政策解释，让群众知道自己的投诉请求，通过哪个途径、依据什么法律规定、按照什么程序去反映和解决，明白找谁办、怎么办。  　　三、加强对干部的教育培训。分类处理工作要采取举办培训班、开展专题讲座、编写辅导读本和操作手册等方式，加强教育培训，使广大干部准确把握分类处理工作要求，增强主动性和自觉性，提高依法办事能力。  商务部办公厅  2015年9月30日  **商务部关于通过法定途径分类处理信访投诉请求清单**  　　商务系统信访事项中按照"法定途径优先"原则，通过仲裁、行政复议、诉讼等途径解决的信访事项分类梳理如下：  　　一、不服行政处分或人事处理决定的  　　商务系统内公务员对涉及本人的有关人事处理不服的、商务部各直属单位和商会、学会、协会工作人员对本单位作出涉及本人的考核结果、处分决定不服的。  　　法定途径：任免机关或监察机关（内部申诉）。  　　二、举报商务主管部门或工作人员违法违纪行为的  　　反映商务主管部门党员干部、工作人员涉嫌违反法定权限实施行政许可、违反规定干扰商务招投标工作、买官卖官，任人唯亲，违规提拔干部、多占住房、超标配车，公款吃喝旅游，生活奢靡等违纪违法行为等。  　　法定途径：纪律监察举报。  　　三、举报企业违法行为的  　　举报企业涉嫌非法经营、侵犯知识产权、偷税漏税、合同欺诈等违法行为。  　　法定途径：向工商行政管理部门、打击侵权假冒办公室、税务主管部门、公安局等机关举报。  　　四、属于民事纠纷的  　　各类经济活动中产生的民事纠纷。  　　法定途径：有仲裁协议的，按照仲裁协议向有管辖权的仲裁机构申请仲裁。没有仲裁协议的，向法院提起民事诉讼。  　　五、属于行政复议和行政诉讼法范围的  　　（一）对行政机关作出的警告、罚款、没收违法所得、没收非法财物、责令停产停业、暂扣或者吊销许可证、暂扣或者吊销执照等处罚决定不服的；  　　（二）对行政机关作出的查封、扣押、冻结财产等行政强制措施和行政强制执行不服的；  　　（三）申请行政许可，行政机关拒绝或者在法定期限内不予答复，或者对行政机关作出的有关行政许可证、执照、资质证、资格证等证书变更、中止、撤销的决定不服的；  　　（四）认为行政机关侵犯合法的经营自主权的；  　　（五）认为行政机关滥用行政权力排除或者限制竞争的；  　　（六）认为行政机关违法集资、摊派费用或者违法要求履行其他义务的；  　　（七）认为行政机关侵犯其他合法权益的。  　　法定途径：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